

#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9. 13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9월 4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0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7. 9. 13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장 종 환

가. 제안이유

주택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 개정 골자

서강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하중동 1의1번지, 1의2번지, 2번지, 3의1번지, 3의2번지, 3의3번지, 3의4번지, 3의5번지, 17의2번지, 29의18번지, 29의20번지를 창전동에 편입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동 개정조례안은 서강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서강지역 주택조합측에서 2007년 2월 13일 동 사업지역내의 법정동에 대한

경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신축 아파트단지 내에 소재한 하중동 1의1번지를 포함한 11필지 1,119㎡를 창전동에 편입함으로써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규정한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